

# 이미지관리 규정

<개정 2021.03.12.>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이미지사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교에서 제작 의뢰하는 모든 인쇄물과 홍보물,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에 적용한다.

## 제3조 (이미지의 종류)

이미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심볼마크
- ② 로고타입
- ③ 시그니처
- ④ 엠블렘
- ⑤ 워드마크
- ⑥ 캐릭터
- ⑦ 지정서체 : 윤고딕, 윤명조, Helvetica, Helvetica Bold, Time

## 제4조 (담당)

이미지에 대한 사항은 기획조정처에서 담당한다.<개정 2021.03.12.>

## 제5조 (기타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이미지통합규정집의 사항을 준용한다.

부 칙 (2002.11.1.)

## 제1조 (시행일)

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03.12.)

## 제1조 (시행일)

2021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